



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 9. 30.] [조례 제2302호, 2025. 9. 30., 일부개정]

경기도 파주시(청년청소년과), 031-940-522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5. 7. 1., 2008. 5. 30., 2012. 2. 17., 2019. 10. 4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05. 7. 1., 2012. 2. 17., 2019. 10. 4.>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육성”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,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.
3. 삭제<2019. 10. 4.>
4. 삭제<2019. 10. 4.>

제3장 청소년지도위원

제12조(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)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·면·동장, 경찰관서의 장, 학교장,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한다.<개정 2012. 2. 17., 2019. 10. 4.>

1.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
2.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
3.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
4.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,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<신설 2019. 10. 4.>

[제목개정 2019. 10. 4.]

제13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2. 2. 17., 2019. 10. 4.>

1. 청소년의 보호·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·장려 및 지원
3.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
4.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
5. 청소년 우범지역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, 선도·지도 및 정화 활동
6.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·지원활동 등

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2. 17., 2018. 2. 9., 2025. 9. 30>

[제14조에서 이동 <2019. 10. 4.>]

제14조(지도위원의 수) 지도위원의 수는 읍·면·동 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·면·동 별 여건(인구, 학교 소재 등)을 참작하여 위축한다.<개정 2012. 2. 17., 2019. 10. 4., 2025. 9. 30>

제15조(지도위원의 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2. 2. 17., 2019. 10. 4.>

[제16조에서 이동 <2019. 10. 4.>]

제16조(지도위원의 해촉)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도위원의 의무에 위배된 경우

[본조신설 2019. 10. 4.]

제17조(증표 교부)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지참하고 관계 청소년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<개정 2019. 10. 4.>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위원증의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<신설 2019. 10. 4.>

[제목개정 2012. 2. 17., 2019. 10. 4.]

제18조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·면·동 지도위원이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파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(이하 "청소년지도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10. 4.]

제5장 보칙

제24조(포상)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파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,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·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26.]

제25조(수당 등) 위원회, 청소년지도협의회,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과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08. 5. 30., 2011. 6. 17., 2012. 2. 17., 2019. 10. 4., 2019. 12. 27.>

[전문개정 2001. 8. 10.]

[제24조에서 이동 <2023. 12. 26.>]

[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<2023. 12. 26.>]
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25조에서 이동 <2023. 12. 26.>]

